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40호 2024. 7. 19(금)

선 람	기관의 장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2024-128호 세전지구 배수개선사업 지형도면 고시-----1

공 고

○ 남원시 고시 제2024-1410호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 남원시 고시 제2024-1420호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3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고시 제2024 - 128호

세전지구 배수개선사업 지형도면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승인된 세전지구 배수개선사업 구간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남 원 시 장
2024년 07월 19일

- 1. 지역, 지구명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지역, 세전지구
- 2. 지형도면 고시내용

지역명칭	위 치		편입현황		지역결정일
	기 점	종 점	필지수	면 적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38-4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512	225	28,353.6	2024.06.

※ 지형도면 : 별첨(상세한 도면은 따로 열람하여야 함)

- 3. 지형도면 열람장소
 - 남원시 농정과 (063-620-6389)
 - 남원시 민원과 (063-620-6145)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063-620-2066)
- 4. 첨부서류
 - 세전지구 사업 관련 구역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

남원시 공고 제2024-1410호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사회복지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복지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 대상 추가 (안 제6조 및 제7조)
- 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임기 수정 (안 제8조)

3. 입법예고기간 : 2024. 7. 20. ~ 2024. 8. 9.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4년 8월 9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welfare7942@korea.kr), fax(063-620-6711)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3-620-683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4. 7.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주민복지과장

1. 개정이유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 대상 추가 (안 제6조 및 제7조)
- 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임기 수정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7. 20. ~ 2024. 8. 9.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 3) 규제예비심사:
 - 4) 성별영향평가:
 - 5) 부패영향평가: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아동청소년·노인복지담당”을 “아동청소년·보육지원·노인돌봄·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아동청소년·노인복지”를 “아동청소년·보육지원·노인돌봄·노인복지”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 ③ (생략)

④ 협의체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②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 있다.

--.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붙임

관련 법령

■ 사회복지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복지장을 증진하고, 사회복지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복지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복지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1. 사회복지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복지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복지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 3. 21.>

⑧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7. 9. 21.>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면장·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 9. 21.>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17. 9. 21.>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자치법규 명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4-1420호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는 조문을 추가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른 위원회 대행 근거 신설(안 제10조)

3. 입법예고기간 : 2024. 7. 19. ~ 2024. 8. 9.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4년 8월 9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bechris@korea.kr), fax(063-620-6823)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주민복지과 복지행정팀(☎063-620-682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4. 7.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주민복지과장

1. 개정이유

상위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남원시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가 처우 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는 조문을 추가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른 위원회 대행 근거 신설(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7. . ~ 2024. 8. .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4) 성별영향평가:

5) 부패영향평가: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대표협의체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붙임

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자치법규 명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